세대별 미래 노후소득보장 수준 추정 :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임금연공성을 반영하여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서론

- 한국에서 노인빈곤의 심각성은 이제는 매우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임.
- 이러한 노후소득부족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노인들이 빈곤선 밑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은 물론, 소수를 제외하고는 빈곤선 위에 있는 노인들조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구 선진국에서 노인은 더 이상 주요한 빈곤계층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노인이 가장 핵심적인 빈곤계층임 (표 1-1). 부연하면, 서구 국가들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노인이 가장 빈곤계층이었고 이들의 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최대 목표였고 이는 관대한연금제도 구축으로 이어졌음. 그러한연금제도가 수십 년 운영되어온 결과 서구에서 노인들의 빈곤율은 전체인구집단의 빈곤율보다 낮아진 경우가 많았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의 빈곤율이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임.

<표 1-1> 각 국의 집단별 빈곤율(2013)

(단위:%)

국가명	노인	아동	전체	국가명	노인	아동	전체
덴마크	3.8	2.7	5.4	이탈리아	9.3	17.7	13.3
노르웨이	4.3	6.8	7.8	한국	49.6	8.0	14.6
네덜란드	2.1	10.5	7.9	그리스	8.6	18.7	15.1
프랑스	3.5	11.3	8.0	스페인	5.5	23.4	15.9
스웨덴	7.5	8.5	8.8	미국	20.6	20.6	17.2
영국	13.5	9.9	10.4	독일	8.4	9.8	9.1

주: 아동은 17세 이하.

-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만, 단일한 접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오늘날 서구의 노후소득부족 현상이 주로 연금제도의 축소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

으로 인한 것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해결 역시 단순한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음.

- 그러한 핵심적인 이유는, 세대별로 적용되는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임.
- 80대 이상은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이었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연금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세대였음. 70대 이상은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1999년) 이미 50대에 진입하였으며, 일부가 국민연금 도입 (1988년) 초기였던 40대부터 가입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 베이비부머세대도 일부 포함되는 60대의 경우는 빠르면 30대 때부터, 늦어도 40대 중반부터 15-20년 정도 국민연금 가입은 했었던 세대였으나 이들 역시 국민연금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세대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60대 이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미흡했던 이들의 노후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들의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었음. 그러나, 기초연금은 극빈 상황의 노인들의 생활을 일부 개선시키는 것이었을 뿐 빈곤을 벗어나게 하거나 기존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었음. 분명한 것은 현재의 60대 이상의 경우 노후준비는 (불충분한)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었다는 점임.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빈곤을 벗어날 수준의 보호가 불가능하였고, 부동산이나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소수만이 안정된 노후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 개인연금이 1994년 도입되었으나 실제 연금 (annuity) 방식으로 수급하여 유의미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하지못했으며 퇴직금은 주택이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전용되었음. 이들 중 일부는 자녀등으로부터 사적이전 (private transfer)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중은 최근 들어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현재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이외에는 다른 대안적인 방안이 고려되기 어려운 상황임.
- 현재 근로세대인 50대 이하를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이 향후 10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 현재의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준비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움.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나 일시금 수령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식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퇴직연금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임. 그리고 개인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수단이라기 보다는 세제혜택 수단이라는 인식에 머무르고 있음. 50대의 경우는 20대나 30대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세대라는 점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현저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보장이 강화될 것임. 그러나, 국

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연금수급자가 되었을 때 안정적인 노후소 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40대 이하 역시 노후소득이 안정적이라고 예상되지 않음. 40대 이하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국민연금 이외에 유의미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함. 이들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 초기 높은 소득대체율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상당히 낮아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은퇴까지 25년 정도를 가입한다고 해도 현재가치로 100만 원 정도 이상의 국민연금급여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음.
- 따라서, 세대별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방안은 차별화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노인세대와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의 경우는 기초연금이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 소극적인 방안 이외에는 노후소득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 어려움. 따라서 연금제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주요한 대상은 40대 이하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40대 이하 세대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두고자 함.
- 그런데, 이러한 노후소득부족 현상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 제도의 문제와 노동시장의 문제가 섞여서 나타남.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부족 현상이 제도 국민연금 가 가지는 보장성 부족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서 그 보장성 부족이 짧은 가입기간 때문이 라고 분석하는 경우는 사실은 노동시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임.
- 많은 실증 연구들의 경우, 향후 한국의 노후소득 부족을 예상하지만 그 대안 마련에 있어서 제도의 문제와 노동시장의 문제가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임.
- 선행연구인 정창률 (2018)은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에 초점을 두고 현 근로세대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향후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얻게 되는지를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을 통해서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였음.
- 그 결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근로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제도로 두는 경우 장 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수준은 결코 서구 국가들의 연금 수준에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음. 다만, 사용한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이 제도의 국제 비교를 위해서 거시경제 변수나 노동이력이나 임금체계에 대해서 한국 현실과 괴리가 있었음.

- 본 연구는 한국 노동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세대별로 미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추정하고자 함.
-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근로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퇴직연금 제도에 적용하되 한국 현실에 맞는 노동이력이나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추정하고자 함. 다만, 한국의 경우 직종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체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구분하여 노후소득을 추정하도록 함. 그리고, 외국연금제도와의 비교를 위해 이미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거시경제 변수를 그대로 따랐던 정창률 (2018)과 달리, 본 연구는 거시 경제 변수 역시 한국 현실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수치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퇴직연금이 유의미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플랫폼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고자 함.
-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연금 (annuity)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금융기관과 연금계약을 맺기 어렵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플랫폼을 다룰 필요가 있음.

2. 이론적 배경

- 1) 노후소득 추정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한계
- 노후소득을 추정하는 다양한 방식과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음.
- 첫째는 순수하게 연금 제도를 비교하는 것인 반면, 둘째는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나 (평균) 소득수준 등을 고려 (추정)하여 실질 노후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임1).
- 정창률 (2018) 에서 한국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제도적 비교를 실시하였고, 국민연

¹⁾ 이에 대해서는 정창률 (2018)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음

금과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국제적 기준에서 부족한 수준은 아님을 보였음. 정창률(2018)에서는 Meyer eds., (2007)의 가정에 기초하여 가입자들의 근로 이력이나 임금 수준을 적용하였음. 이는 한국 연금 제도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능함. 예를 들어, Meyer eds., (2007) 의 가정에서는 임금연공성이 가장 강한집단 가 40년 근로 후 실질 임금이 2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우리나라현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또한, Meyer, eds., (2007)은 근로 기간 역시 다수의집단 가 35년 이상을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역시 한국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실제 문제는 연금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후소득의 부족이 여전히 예상되고 있다는 점임. 이 경우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에 20년 남짓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상 국민연금 액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추정되고 있음. - 우해봉, 한정림 (2015)은 실질 노후소득을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음. 여기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액을 합산하여 세대별/성별로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대표 가입자를 설정하여 소득대체율을 설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종별, 고용형태별 임금체계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없었음. 다시 말해서, 이 방법은 평균치를 제시하는 것일 뿐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정규직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한지, 생산직이 사무직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한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평균치만을 가지고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한 노후소득수준을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2) 노후소득보장 수준 추정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의 이해

-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후소득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특히 연금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연금액 추정에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수준, 특히 기업 내부노동시 장 관행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공임금'2)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전수연 (2014) 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4.0% 수준으로 나타남. 그리고, 연공형 임금체계는 우리나라 만의현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알려져 있음. 고용노동부 (2016)에 따르면 한국의 연공성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 수준)은 328.8로서 EU 평균 169.9나 일본의 246.4에 비해서훨씬 심함. 게다가 이러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상당히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황수경(2005)에 따르면, 연공임금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임금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중고령 노동자로 갈수록그 현상은 더욱 심해짐. 전수연 (2014)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사이의 임금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규직 진입 여부에 따라서 노후소득수준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다시 말해연공임금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노후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임.
- 물론 최근 들어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과거 보다는 임금연공성이 약화되고 있으나, 연공임금은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 내부노 동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음(정이환, 2013).

			민간기업	
		정규직 (A)	비정규직 (B)	(B/A)
1414	남자	4,149	2,421	58.4
성별	여자	3,003	1,755	58.4
-1-111	고졸이하	3,094	1,765	57.0
	전문대졸	3,139	1,939	61.8
학력별	대졸	4,402	2,372	53.9
	대학원졸	5,783	2,333	40.3
	20~29세	2,630	1,677	63.8
CH 콘테	30~39세	3,713	2,281	61.4
연령별	40~49세	4,607	2,409	52.3
	50~59세	4,483	2,558	57.1

- 둘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애 근로기간 공적연금 가입기간 이 현저히 낮 은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Grech (2015)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영국 약 34년, 독일 약 33.5년, 스웨덴

²⁾ 연공임금은 근속년수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제도 또는 임금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정기적 호봉 승급제도이다.

약 37년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됨. 우해봉, 한정림 (2015)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평균 24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낮은 공적연금 가입기간 - 생애 근로기간 - 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은 물론 근로가능 연령에서조차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3).

-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공적연금 소득 관련 연구에서 생애 근로기간과 공적연금 가입기간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적연금에 가입하도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실제로는 비정규직이나 비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임금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김복순 (2015) 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5.9%에 불과함. 그러나,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는 국가의 행정력에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연금액을 추정하고자 할 때는 근로기간과 가입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일반적임.

-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의 생애 근로기간이 고용이 불안정적인 비정규직의 생애 근로기간보다 훨씬 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실증적으로드러난 것은 없음. 비정규직의 경우 근속년수가 매우 짧으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직이 불가피하며 오랫동안 - 우리나라의 effective retirement age 는 70세를 초과하고 있음 (OECD 최고 수준) - 일해야 하는 상황임. 반면, 안정적인 (공기업등의) 정규직의 경우는 근속년수는 길지만 (50대 초반) 퇴직 이후 변변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연금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남.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생애 근로기간에서 더 높다는 분석을 찾기 어려움. 다만, 비정규직이면서 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소득을 추정해볼필요는 있음.

- 그리고, 사적연금 - 대개 기업연금 - 의 경우는 또 다른데, 기업연금을 의무적인 혹은 준의무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업연금은 예외없이 공적연금보다 가입자 수나 가입기간이 짧음. 이는 기업연금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부가적인 노후소 득보장 수단이기 때문에 가입대상 소득이 공적연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임.

³⁾ 이러한 낮은 평균 가입기간은 사실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 이후 근로 이력이 단절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그들의 경력 단절이 평균적인 가입기간을 상당히 낮추었을 개연성이 상당함. 다시 말해서, breadwinner 의 평균 생애 근로기간을 20-25년 정도로 추정하는 것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

- 셋째, 우리나라에서 직종 사이의 임금 차이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직종 사이의 임금 차이는 대표적으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직종 사이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큰 편이며, 치열한 입시 경쟁 등도 사실은 고임금 직업군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임.
- 직종의 구분은 매우 세분화될 수 있으며 같은 직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임금 차이는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연구의 목적은 각 직종에 따른 임금 차이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노후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이 높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노후소득 수준 차이를 추정하여 제도 개선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관리직	6,095	5,892	96.7
	전문직	4,455	2,376	53.3
TIOLH	사무직	4,013	1,896	47.2
직업별	서비스직	2,965	1,996	67.3
	기능원	3,376	2,361	69.9
	장치, 기계조작직	3,017	1,609	53.3
계		3,851	2,079	54.0

- 그 외에도 실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여러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음.
- 성별 임금 차이의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추정하도록 함. 그 외에도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차이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3. 연구 방법

- 1)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
- 본 연구는 전일제 임금근로자들의 사례 (case)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방식을

활용하였음.4)

- 다만 Meyer et al.(2007), Bridgen & Meyer(2009)의 인구집단의 고용/임금이력을 그대로 사용했던 정창률(2018)과 달리,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집단을 설정하였음. 이에 한국노동패널(KLIPS) 20차 자료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연공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총 6개의 인구집단을 설정하였음.
- 2)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설정
-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설정 기준
- 기업규모를 크게 50인 미만, 300인 이상으로 나누고, 남녀 3명씩 성별을 고려하였음. 각 집단의 생애평균임금은 연령에 따라 가중평균하였고, 집단별 교육수준은 노동패널에서 해당 집단별 최빈값으로 설정하였음.
- (주된 일자리 기준) 전일제 임금근로자 가운데 분석대상의 기준이 되는 출생코호 트는 1970년생(2017년 기준, 만 47세)로, 이들의 노동시장 최초 진입 연령은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대졸 26세, 고졸 22세, 여성 대졸 24세, 고졸 19세로 설정함.
- 직종은 직업분류코드(6차 개정)에 따라 '화이트칼라'(관리사무직)과 '블루칼라'(숙 련직)으로 나누었고, 임금연공성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서비스 판매직과 단순노무종사자(비숙련육체노동)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표 3-1 참 조).5)

<표 3-1> 직업분류코드(6차 개정)에 따른 직종 분류

⁴⁾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에 관한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자세한 내용은 정창률(2012, 2018)을 참조할 것.

⁵⁾ 또한 이들을 분석대상에 포함할 경우, 선행연구(장인성, 2013)의 근속임금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비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진수 외(2015)와 마찬가지로 제외하였다.

분류코드	항목명	분류	특성
1	관리자	관리직	화이트칼라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직	
3	사무종사자	사무직	(관리사무직)
4	서비스종사자	서비스판매직	
5	판매종사자	서비스판매직	_
6	농입어업숙련 종사자	숙련육체노동직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숙련육체노동직	블루칼라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숙련육체노동직	(숙련직)
9	단순노무 종사자	비숙련육체노동직	
A	직업군인	_	_
Z	기타	_	

○ 분석대상 분포

- 노동패널 20차 개인용 자료에서 <표 3-1>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1970년생 전 일제 임금근로자 105명을 추출하였고, 이들의 분포는 다음과 같음(표 3-2 참조).
-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68.5%)의 비중이 훨씬 높고,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훨씬 높았음. 남성 상용직의 경우 화이트칼라 종사자 가 절반 가까이 높았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의 화이트칼라 종사자 비중이 여성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표 3-2> 분석대상 분포

(단위: 명)

		상용직		임시일용직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계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계	
남성	46	22	68	1	3	4	
여성	19	8	27	5	1	6	
계	65	30	95	6	4	10	

주) 노동패널 20차에서 추출

○ 분석대상의 월평균임금

- 전체 월평균임금은 361만원(2017년 기준)이었으며, 이 중 상용직 371.1만원, 임시 일용직은 269만원으로 임시일용직의 임금수준이 상용직의 약 72% 수준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422.5만원, 여성 228.1만원으로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약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이 상당한 것이확인되었음.
- 이 같은 임금분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임금차이 을 비교한 김

복순(2015)의 분석결과와도 거의 일치함. 김복순(2015)에서는 2014년 기준, 중소규모 기업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68.4%, 대규모 기업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66.1%로 분석된 바 있음.

<표 3-3> 종사상 지위 및 성별에 따른 임금 수준

(단위: 만원)

구분	상용	용직	임시역	밀용직
丁正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남성	449.7	378.8	400	333.3
여성	254.7	175	222	180

주) 노동패널 20차에서 추출

○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설정

- 상용직 구성은 패널자료에서 장인성(2013)과 동일한 인구집단을 추출한 뒤, 각 집 단별 최빈값으로 설정하였으며, 패널 조사년도(2017년) 이후에는 조사 당시의 종 사상 지위가 은퇴시점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함.6)
- 국민연금 가입의 경우, 패널자료만으로는 가입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상태일 경우 가입, 실업이나 은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미가입상태인 것으로 가정하였음.
- 아래 <표 3-4>와 같이,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은 남성 3명, 여성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체 종사자는 모두 대졸,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체 종사자는 고졸로 이루어짐.
- 집단 2의 경우, 대규모 기업체에 화이트칼라로 종사하는 대졸 남성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높음. 집단 3, 4, 6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교육수준과 직종,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집단 6은 생애 후반부의 실업기간이 길고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로, 집단 4와 인적, 노동시장 특성이 동일하지만 근속기간에 따라 생애 평균임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집단 4, 5는인적, 노동시장 특성이 모두 같지만 성별 차이, 출산으로 인한 근로이력의 차이가생애평균임금에서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표 3-4>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특성

(단위: 만원, 년)

구분	성별	기업규모	평균	종사상	교육	직종	국민연금	가입	비고
----	----	------	----	-----	----	----	------	----	----

⁶⁾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일자리 이동이 전보다 잦아졌지만 패널 조사년도 이후의 고용형태는 <mark>임의로</mark>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당시 주된 일자리에서의 특성이 은퇴 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임금	지위	수준		가입시점	기간	
7] rl.1	남성	50인미만	245.5	상용	고졸	블루	1004	22	무노조,
집단1	월 28	30인미인	(78.9)	78 B	元三	칼라	1994	33	조기은퇴
집단2	남성	300인	444.5	상용	대졸	화이트	1989	30	유노조,
省セム	달 28	이상	(142.9)	78 B	네글	칼라	1909	50	조기은퇴
집단3	여성	300인	281.0	상용	대졸	화이트	1992	31	조기은퇴
省包3	978	이상	(90.4)	6 6	네글	칼라	1992	31	조기근되
집단4	여성	50인미만	168.2	임시	고졸	블루	1989	31	실업,
百七4	978	50 단 미 단	(54.1)	일용	上 三	칼라	1909	31	자녀 2명
집단5	남성	50인미만	230.1	임시	고졸	블루	1992	31	실업
角型の	H O	50 한 학 현	(74.0)	일용	工 5	칼라	1992	31	'근 ㅂ
집단6	여성	50인미만	159.0	임시	고졸	블루	1989	21	실업,
百년0	77.8	50 한 미 현	(51.1)	일용	11.5	칼라	1309	<u> </u>	자녀 2명

주 1) 1970년생 기준

○ 집단별 임금연공성(근속임금)의 반영

-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기존의 선행연구 장인성(2013), 김진수 외(2015) 에서 다룬 임금연공성을 활용하여 근속기간 증가에 따른 집단별 연공임금을 반영하였음(표 3-5, 그림 3-1 참조).
- 장인성(2013)의 연구의 연공성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인구 집단의 기준(성별, 기업규모)과 집단 분류가 일치하며, 비모수적(nonparametric) 임금곡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게 임금의 연공성을 추정하였기 때문임.

<표 3-5> 집단별 근속임금의 변화

		상용직			임시일용직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구분	고졸/남성/ 50인 미만/무노 조/블루칼 라	대졸/남성/ 300인이상/ 유노조/화 이트칼라	대졸/여성/ 300인/화이 트칼라	고졸/여성/ 50인미만/ 블루칼라	고졸/남성/ 50인미만/ 블루칼라	고졸/여성/ 50인미만/ 블루칼라
5년	1.13	1.31	1.27		1.18	
10년	1.25	1.62	1.55		1.29	
15년	1.37	1.93	1.83		1.40	
20년	1.46	2.23	2.11		1.51	
25년	1.51	2.54	2.40		1.52	
30년	1.56	2.84	2.70		1.37	

주 1) 초기임금을 1.00으로 할 때 근속연수별 배수

주 2) 평균임금 항목의 괄호 안 수치는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비율(%)

주 3) 각 집단별 자세한 근로이력은 <부록 1> 참조

주 2) 집단 6은 집단 4와 노동시장 특성은 같으나. 근속기간에서만 차이가 발생 자료: 장인성(2013) 재구성

2.84 2.7 2.5 1.56 1.31 1.18 1 13 1 0.5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5,6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그림 3-1] 집단별 근속임금의 변화(30년)

주) <표 3-5>와 동일

3) 연금액 추정을 위한 기초 가정

○ 분석대상은 출생코호트(1970년생, 1980년생, 1990년생)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표 3-6 참조), 노후소득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 여기에 의무화시점(2020년) 이후 퇴직연금(DC 및 DB형)을 합산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음.

<표 3-6> 출생년도에 따른 가설적 인구집단의 분류

구분	1970년생	1980년생	1990년생
노동시장 최초 진입시기	1989~1996년	1999~2006년	2009~2016년
퇴직연금 의무화시점 (2020년)	만 50세	만 40세	만 30세
연금 수급개시년도 (만 65세)	2035년	2045년	2055년

○ 연금급여 산출 시 가정

- 2017년 이후 평균임금과 연금액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2018년) 당시 가정 된 거시경제변수의 수치들을 가지고 추정함(표 3-7 참조). 예를 들어 2017년 이후 A값과 상/하한선 예측치의 경우 실질임금상승률 예측치를 적용하였음.

-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기금투자수익률'과 '실질금리' 예측치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 DC 방식 하에 보험료율은 8.3%이며, 연금비율(annuity ratio)은 5%로 설정하였음.
- 남성의 경우 수급시점에서 군복무크레딧(A값의 50%)을, 여성의 경우 출산이력을 바탕으로 자녀 2명 이상에 대하여 출산크레딧(A값의 100%)을 적용함.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만 65세와 만 60세(조기노령연금)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

<표 3-7> 거시경제변수 및 기금투자수익률 가정(2018~2060년)

(단위: %)

구분	2018~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2041~2050년	2051~2060년
실질임금 상승률	2.1	2.1	2.1	2.0	1.9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실질금리	1.1	1.4	1.5	1.4	1.3
기금투자 수익률	4.9	4.8	4.6	4.5	4.5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4. 연구 결과

-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정창률 (2018)의 후속연구로서, 한국 현실에 맞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적용하고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직종별/고용형태별/성별로 6개의 집단 (case)을 설정하여 세대별 1970년생, 1980년생, 1990년생 노후소득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하였음.
- 현시점까지의 사회경제적 변수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은 실측치를 기초로 하고, 이후의 변수는 기본적으로 제4차국민연금재정재계산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사용하되, 퇴직연금 수익률은 DC 방식의 경우 예상실질금리를 구분하여 추정하고 DB 방식은 별도로 추정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의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사용하여 DC 방식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적용하였음.

1) 1970년생

(1) DC 퇴직연금 가입 (예상 실질금리를 퇴직연금 수익률로 사용하는 경우)

○ 표 4-1 은 1970년생이 65세 이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상금액을 6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퇴직연금 수익률은 예상 실질금리를 수익률로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

- 먼저, 국민연금 액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함.
- 6개 집단 중에서 가입기간이 현저히 짧은 집단 6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액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집단 1-5의 생애 평균임금 차이는 2.5배 (집단 2와 4)를 상회하지만, 국민연금 액수 차이는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과소득상한의 존재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른 것으로, 집단 2와 4의 경우 비슷한 가입기간을 가지는 두 집단의 소득이 상당한 소득차이가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나타남.
- 연금급여의 절대액으로 볼 때, 생애 평균임금이 전체 평균임금의 54%에 불과한 집단 4의 경우도 30년을 가입하는 경우 빈곤선을 벗어나는 수준의 국민연금 액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물론, 적정성 측면에서는 관점에 따라 해석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비록 소득이 낮은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이충분히 이루어지기만 하면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남아있기만 하면) 노인들의 절대 빈곤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집단 6의 경우는 평균 임금도 낮지만 가입기간이 20년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는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기능할 수 없는 상황임을 나타냄. 따라서,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생애 근속년수가 국민연금 가입년수와 최대한 같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야할 것임.
- 다만, 1970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부재한 경우, 소득대체율이나 평균임금 대비 금액으로 볼 때 퇴직 전의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 (DC)까지 합산하는 경우, 국민연금만 수급할 때와 비교할 때 노후소득 이 다소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은 수준임.
- 이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퇴직연금의 강제적용 (의무화)을 가정하였고, 따라서 1970년생의 경우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음. 특히, 노동시장에서 일찍 이탈하는 화이트 칼라들 (집단 2,3)의 경우 (퇴직연금액수는 다소 높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5% 미만인 수준임.
- 결과적으로 1970년 생의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방 안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 연구에서 가정한 화이트칼라의 임금이 력과 달리 연금수급개시연령까지 정규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퇴직연금액도 주요한

노후소득보장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종합해보면, 이 연구의 여러 제반 가정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결과, 생애 근로이력이 30년 정도만 보장이 되면 (다시 말해서 집단 6을 제외하면) 합산연금액이 현재 가치로 월 100만 원 정도는 가능한 상황임. 다만, 이는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했을 때의 상황으로서, 퇴직연금의 경우는 1970년생의 경우 소득이 높든 낮든 그다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표 4-1> 1970년생 기준 예상 연금액 (퇴직연금 수익률에 예상 실질금리 적용) (단위: 원, %)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산						
	ন যথান							
집단	연금액	소득 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퇴직연금액	합산연금액	합산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1	1,073,406	43.7	34.5	83,314	1,156,720	47.1	37.2	
2	1,319,225	29.7	42.4	218,272	1,537,497	34.6	49.4	
3	1,053,470	37.5	33.9	115,641	1,169,111	41.6	37.6	
4	825,890	49.1	26.6	97,325	923,215	54.9	29.7	
5	932,344	40.5	30.0	153,657	1,086,001	47.2	34.9	
6	613,248	38.6	19.7	10,789	624,037	39.2	20.1	

주: 모든 연금액은 2017년 불변가치로 확산됨.

(2) DB 퇴직연금 가입

- 표 4-2 은 1970년생이 65세 이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상금액을 6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퇴직연금은 DB 방식을 적용하여) 추 정한 것임.
- 예상 국민연금 금액은 위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함.
- DB 퇴직연금까지 합산하는 경우, DC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퇴직연금의 비중은 높지 못함.
- 앞서도 언급했듯이, 1970년생의 경우 퇴직연금 의무 가입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아서 퇴직연금이 전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미미하나마 DC에 비해서 장기근속자 (집단 2,3)의 경우는 DB 방식이 다소 금액이 높고, 나머지 집단의 경우는 DB 방식이 다소 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반

적으로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혜택을 많이 보는 집단일수록 DB 방식이 유리하다는 통념과 비교적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표 4-2> 1970년생 기준 예상 연금액 (DB 방식으로 퇴직연금액 산정)

(단위: 원, %)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산					
집단	연금액	소득 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퇴직연금액	합산연금액	합산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1	1,073,406	43.7	34.5	81,307	1,154,713	47.0	37.1		
2	1,319,225	29.7	42.4	220,923	1,540,148	34.6	49.5		
3	1,053,470	37.5	33.9	139,995	1,193,465	42.5	38.4		
4	825,890	49.1	26.6	90,373	916,263	54.5	29.5		
5	932,344	40.5	30.0	132,649	1,064,993	46.3	34.2		
6	613,248	38.6	19.7	10,683	623,931	39.2	20.1		

주: 모든 연금액은 2017년 불변가치로 환산한 것임.

2) 1980년생

(1) DC 퇴직연금 가입 (예상 실질금리를 퇴직연금 수익률로 사용하는 경우)

- 표 4-3 은 1980년생이 65세 이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상금액을 6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퇴직연금 수익률은 예상 실질금리를 수익률로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
- 먼저, 국민연금 액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0년생에 비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금액 감소는 연이은 연금개혁에 따른 급여산식 변화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집단 별로 일괄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산식 변화로 특정 계층이더욱 불리해지는 것은 아님. 감소폭은 월 기준으로 볼 때 약 10-18만원 수준으로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 다만, 국민연금액이 낮은 계층의 경우 금액 감소로 인한 충격이더 클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임.
- 다음으로, 퇴직연금까지 합산하는 경우를 보면, 집단 6을 제외하고 총 연금액은 1970년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집단 6의 경우 2020년 이후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퇴직연금 액수의

증가가 국민연금 (제도 변화로 인한) 감소보다 더 적기 때문에 총 연금액이 다소 줄어들지만 다른 계층의 경우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총 연금액은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산액으로 볼 때, 집단 1-5의 경우 198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서 적게는 약 월 2만원, 많게는 약 월 26만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합산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 2로서, 집단 2의 경우는 40세인 2020년부터 퇴직연금에 강제가입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반액을 초과하는 연금급여를 퇴직연금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퇴직연금이소득이 높은 계층의 노후소득을 크게 증가시킴에 따라서 노후소득의 격차를 크게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새롭게 나타남.
- 1970년생이 주로 노후소득의 전반적인 부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1980년생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과 퇴직연금 가입기간의 증가가 계층별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해서, 1980년생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인해서 노후소득이 줄어드는 영향이 퇴직연금으로부터의 혜택 증가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국 현재 30대인 세대부터는 정책적으로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할 것임.

<표 4-3> 1980년생 기준 예상 연금액 (퇴직연금 수익률에 예상 실질금리 적용) (단위: 원, %)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산				
집단	연금액	소득 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퇴직연금액	합산연금액	합산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1	904,401	36.1	28.5	313,954	1,218,355	48.7	38.4	
2	1,134,745	25.0	35.8	665,379	1,800,124	39.7	56.8	
3	892,709	31.1	28.1	397,813	1,290,522	45.0	40.7	
4	713,676	41.6	22.5	234,128	947,804	55.2	29.9	
5	811,628	34.6	25.6	328,453	1,140,081	48.6	35.9	
6	509,470	31.4	16.1	101,403	610,873	37.7	19.3	

주: 모든 연금액은 2017년 불변가치로 환산한 것임.

(2) DB 퇴직연금 가입

○ 표 4-4은 1980년생이 65세 이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퇴직연금 예상금액을 6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퇴직연금은 DB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

한 것임.

- 예상 국민연금 금액은 위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함.
- DB 퇴직연금까지 합산하는 경우, 집단 별로 합산 노후소득은 DC 일 때와 비교할 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 소득이 높은 집단 2의 경우는 표 4-3 (퇴직연금 수익률에 예상 실질금리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합산연금액이 약 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집단 3도 그보다는 적지만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DB 방식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근속기간은 길지만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연공서열이 낮은 집단 1의 경우는 DB 방식 하에서 연금액이 약 2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집단 4와 5의 경우는 DB 방식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예상 실질금리로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그 금액 수준은 미미한 정도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이직이 잦고 연공서열이 낮은 근로자들이 DB 방식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
- 그리고, DB 퇴직연금을 포함한 합산액에서 가장 연금액이 많은 집단 2와 가장 연금액이 적은 집단 6의 연금액 격차가 약 124만원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예상 실질금리에 적용한 경우의 합산액에서의 연금액 격차 119만원에 비해서 다소 커져, DB 방식이 크지는 않으나 다소 연금액 격차를 넓히는 것으로 나타남.
- 1970년생과 비교해보면, 합산액이 줄어드는 집단 6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산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집단 2의 경우, 합산 연금액이 약 3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연공서열이 높은 경우 후세대일수록 연금액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1980년생이 1970년생에 비해서 국민연금액은 감소하지만 퇴직연금액 증가액이 국민연금 감소액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임.

<표 4-4> 1980년생 기준 예상 연금액 (DB 방식으로 퇴직연금액 산정)

(단위: 원, %)

집단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산				
	연금액	소득 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퇴직연금액	합산연금액	합산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1	904,401	36.1	28.5	294,437	1,198,838	47.9	37.8	
2	1,134,745	25.0	35.8	711,133	1,845,878	40.7	58.2	

3	892,709	31.1	28.1	422,470	1,315,179	45.9	41.5
4	713,676	41.6	22.5	223,096	936,772	54.6	29.5
5	811,628	34.6	25.6	301,307	1,112,935	47.4	35.1
6	509,470	31.4	16.1	100,716	610,186	37.6	19.2

주: 모든 연금액은 2017년 불변가치로 환산한 것임.

3) 1990년생

(1) DC 퇴직연금 가입 (예상 실질금리를 퇴직연금 수익률로 사용하는 경우)

- 표 4-5은 1980년생이 65세 이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퇴직연금 예상금액을 6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퇴직연금 수익률은 예상 실질금리를 수익률로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
- 먼저, 국민연금 액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0년생에 비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1990년생을 1970년생과 비교해보면 국민연금 액수의 감소는 더 현저하게 나타남. 1970년생의 경우 6개의 집단 중 3개의 집단이 월 100만 원 이상이고 1개 집단이 90만 원대였던데 반해서, 1990년생의 경우 (1970년생과 근로/임금이력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집단이 하나에 불과하고 90만 원대의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집단도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는 20년 사이에 상당한국민연금액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연금의 급여 감소를 벌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집단 6을 제외하고) 이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30년 정도의 국민연금 가입은 실은 매우 관대한 가입이력을 가정하는 것으로서, 이보다 훨씬 적은 가입이력을 가진 근로자들도 상당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1990년생 이후의 경우 국민연금은 그 제도의 취지인 '소득유지' 기능이 보편적이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내포함.
- 1990년생의 경우는 퇴직연금으로부터 상당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의 경우는 1990년생의 경우 30세부터 강제적용되는 세대라는 점에서 퇴직연금에 상당기간을 가입하게 되는 세대라 볼 수 있음. 높은 연공성으로 인해 임금상승폭이 큰 집단 2의 경우는 국민연금보다도 퇴직연금으로 인한 금액이 더 크게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집단 1,3 역시 퇴직연금액이 국민연금액의 75%를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됨. 상용직인 집단 1,2,3 의 경우, 국민연금액만으로는 소득대체율이 30% 전후에 불과하지만 퇴직연금을 통해서 50% 수준 (혹은 그 이상) 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을 배제하고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설계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임. 선행연구인 정창률 (2018)에 비해서 가입기간이 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7) 30년 정도의 생애 근로이력을 가지는 경우 55% 내외소득대체율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줌.

- 물론, 생애 근로기간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집단 6의 경우는 퇴직연금액까지 합친다 해도 평균임금의 20% 정도에 불과해 노후소득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노후소득의 불평등은 상당히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연금만 수급할 때는 최고연금액과 최저연금액의 격차가 61만원 수준이었으나, 퇴직연금을 합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161만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나타남. 앞서도 언급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후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정책적 방안들이 고려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표 4-5> 1990년생 기준 예상 연금액 (퇴직연금 수익률에 예상 실질금리 적용)

(단위: 원, %)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산				
집단	연금액	소득 대체 율	평균임금 대비	퇴직연금액	연금합산액	합산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1	833,083	32.6	25.8	642,371	1,475,454	57.8	45.6	
2	1,069,838	23.1	33.1	1,200,980	2,270,818	49.1	70.2	
3	828,753	28.4	25.6	745,392	1,574,145	53.9	48.7	
4	665,574	38.0	20.6	365,358	1,030,932	58.9	31.9	
5	755,965	31.6	23.4	493,636	1,249,601	52.2	38.6	
6	458,554	27.7	14.2	205,433	663,987	40.2	20.5	

주: 모든 연금액은 2017년 불변가치로 환산한 것임.

(2) DB 퇴직연금 가입

○ 표 4-6 은 1990년생이 65세 이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퇴직연금 예상금액을 6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퇴직연금은 DB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

○ DB 퇴직연금까지 합산하는 경우, 1980년생일 때와 같이 장기근속 근로자들의

⁷⁾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인 Meyer et al. (2007) 의 가정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노후소득은 DC 보다 높아지는 반면,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경우 DC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집단 2,3의 경우는 퇴직연금액이 국민연금액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DB 퇴직연금이 고용이 안정적이고 연공서열이 높은 중산층 이상에게는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다른 경우에서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DC 보다 DB 일 때 합산 연금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사실 DC의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을 예상 실질금리로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익률을 상당히 낮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연공서열이 낮은 근로자들의 경우 (그리고 집단 1 처럼 고용은 안정되지만 저소득인 경우) DB 퇴직연금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1990년생 기준 예상 연금액 (DB 방식으로 퇴직연금액 산정)

(단위: 원, %)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산				
집단	연금액	소득 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퇴직연금액	합산연금액	합산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1	833,083	32.6	25.8	592,356	1,425,439	55.8	44.1		
2	1,069,838	23.1	33.1	1,394,909	2,464,747	53.3	76.2		
3	828,753	28.4	25.6	849,935	1,678,688	57.4	51.9		
4	665,574	38.0	20.6	351,807	1,017,381	58.1	31.5		
5	755,965	31.6	23.4	460,911	1,216,876	50.8	37.6		
6	458,554	27.7	14.2	204,082	662,636	40.1	20.5		

주: 모든 연금액은 2017년 불변가치로 환산한 것임.

4) 추가적 노후소득 추정 (DC 퇴직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 예상 수익률로 설정하는 경우)

- DC 퇴직연금의 수익률에 대한 가정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창률 (2018)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수익률의 경우 예상 실질금리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액을 추정하였음. 그러나, 이는 보수적인 수익률 가정이며, 만일 DC 퇴직연금수익률이 국민연금 예상 수익률인 경우를 가정하여 1970년생, 1980년생, 1990년생의 노후소득을 추정하도록 함 (표 4-7, 4-8, 4-9).
- 국민연금 예상수익률이 예상 실질금리보다 높다는 점에서 DC 방식끼리의 비교는 불필요하며, 주요한 비교 대상은 DB 퇴직연금이 될 것임.

- 1970년생의 경우, 앞서도 거듭 언급했듯이, 퇴직연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다 지 의미는 없음.
- 집단 3이 예외적으로 DB가 다소 높을 뿐 나머지 집단의 경우는 미미하게나마 국민연금 수익률을 적용한 DC 방식이 합산연금액이 더 높게 나타남.

<표 4-7> 1970년생 기준 예상 연금액 (퇴직연금 수익률에 국민연금 수익률 적용)

(단위: 원, %)

	Ę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산				
집단	연금액	소득 대체 율	평균임금 대비	퇴직연금액	합산연금액	합산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1	1,073,406	43.7	34.5	92,198	1,165,604	47.5	37.5		
2	1,319,225	29.7	42.4	245,314	1,564,539	35.2	50.3		
3	1,053,470	37.5	33.9	127,828	1,181,298	42.0	38.0		
4	825,890	49.1	26.6	107,226	933,116	55.5	30.0		
5	932,344	40.5	30.0	186,306	1,118,650	48.6	36.0		
6	613,248	38.6	19.7	11,151	624,399	39.3	20.1		

주: 모든 연금액은 2017년 불변가치로 환산한 것임.

- 1980년생과 1990년 생의 경우 앞에서 다룬 DC 와 DB 방식과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 구성은 큰 차이가 없음. 다만, 퇴직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 예상 수익률로 설정하는 경우, 1980년생과 1990년생의 경우 모두 DB 방식보다 합산 연금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 예상 수익률 정도만 필적할 수 있으면, 사용자들이 상당히 도입을 부담스러워 하는 DB 방식보다도 높은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임. 이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요소일 것임.

<표 4-8> 1980년생 기준 예상 연금액 (퇴직연금 수익률에 국민연금 수익률 적용)

(단위: 원, %)

기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산				
집단	연금액	소득 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퇴직연금액	합산연금액	합산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1	904,401	36.1	28.5	410,376	1,314,777	52.5	41.5
2	1,134,745	25.0	35.8	872,088	2,006,833	44.3	63.3
3	892,709	31.1	28.1	514,155	1,406,864	49.1	44.4
4	713,676	41.6	22.5	262,212	975,888	56.9	30.8
5	811,628	34.6	25.6	387,461	1,199,089	51.1	37.8
6	509,470	31.4	16.1	111,651	621,121	38.3	19.6

주: 연금액은 2017년 물가로 환산한 것임.

<표 4-9> 1990년생 기준 예상 연금액 (퇴직연금 수익률에 국민연금 수익률 적용)

(단위: 원, %)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산				
집단	연금액	소득 대체 율	평균임금 대비	퇴직연금액	합산연금액	합산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1	833,083	32.6	25.8	985,593	1,818,676	71.2	56.2	
2	1,069,838	23.1	33.1	1,812,087	2,881,925	62.3	89.1	
3	828,753	28.4	25.6	1,112,502	1,941,255	66.4	60.0	
4	665,574	38.0	20.6	408,305	1,073,879	61.4	33.2	
5	755,965	31.6	23.4	580,453	1,336,418	55.8	41.3	
6	458,554	27.7	14.2	226,964	685,518	41.5	21.2	

주: 모든 연금액은 2017년 불변가치로 환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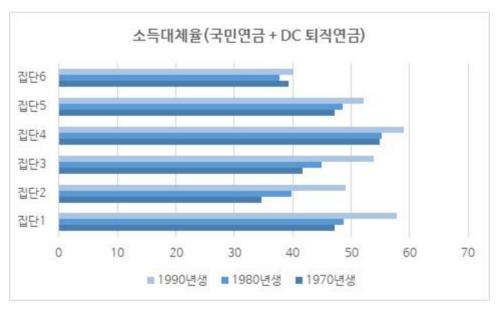
5) 소결

- 이상은 세대별, 소득수준별, 직종별, 성별로 한국의 향후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추정하였음. 이러한 추정에 기초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로 인한 국민연금액 감소는 퇴직연금의 정상 화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과 2007년 법 개정으로 점진적으로 소득대체율이 평균 (40년 가입기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음. 1970년생과 1990년생을 비교해볼 때, 소득계층별로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고용이력과 임금이력을 가지는 경우) 월 15-25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음.
- 반면,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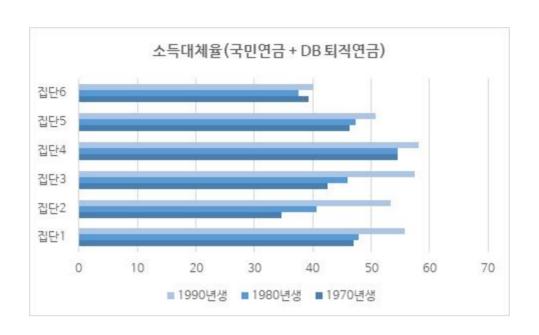
우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이후 강제가입을 가정함 - 퇴직연금으로 인한 연금액증가는 국민연금의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상황임. 다시 말해서, 퇴직연금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 강제가입, 중간정산 금지, annuity 의무화 등 - 노후소득액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특히, 퇴직연금에 거의 가입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1970년생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겠으나, 1990년생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경우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을 통해서 더 높은 연금액을 받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그림 4-1과 그림 4-2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세대별로 어떻게 노후소득이 변하는지를 비교한 표임.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 6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이 (국민연금 급여 하락에도 불구하고) 합계 노후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집단 2,3 처럼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퇴직연금으로 인해서 노후소득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세대별 국민연금과 DC 퇴직연금 (예상 실질금리를 수익률로 적용) 합계 예상 소득대체율



<그림 4-2> 세대별 국민연금과 DB 퇴직연금 합계 예상 소득대체율



- 정창률 (2018) 에서도 언급했었으나, (보험료 인상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평균소득대체율 45% 유지)보다 퇴직연금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물론, 이는 현재의 퇴직연금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양한 규제 (regulation)를 통해서 공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
- 다만,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국민연금의 비중이 줄고 퇴직연금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 높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금소득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기능을 순수하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계층별, 직종별로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의 공적역할을 강화하여 중산층 이상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민연금의급여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고 퇴직연금으로부터 혜택을 적게 받는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이 필요함.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최저연금 (minimum pension)과같은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다만, 현재 기초연금 제도와의 관계 정립 등을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저소득층, 특히 생애 근로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소득의 상당한 부족 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됨.
- 국민연금의 경우 저소득층은 재분배 기능에 의해서 기여 대비 급여가 높은 대신,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재분배 기능이 없어서, 짧은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급여 저하

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집단 6이 생애 근로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으로서 이들의 경우어떠한 세대라도, 국민연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을 포함하더라도 노후빈곤을 피하기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집단 6과 사실상 유사한 인적, 노동시장 특성을 가지면서도 10년 정도 더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31년을 기여한 집단 4의 경우는 집단 6에비해 상당히 안정된 노후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제도 설계로는 소득수준보다는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더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다만, 이 문제는 연금 정책 변화로 해소하는 것은한계가 있으며, 최저연금 등은 다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음, 노후소득 불평등 확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국민연금의 축소와 퇴직연금의 확대는 중산층 이상이 급여증가의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후소득의 격차 확대가 예상됨. 이는 정창률 (2018)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으로, 1970년생이 주로 전반적인 노후소득 부족이 문제의 핵심으로 예상되는 반면, 1990년생은 노후소득의 불평등이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노인세대를 위해서는 노후소득의 부족을 위해서 기초연금의 강화가 주요한 정책 대안이었던 반면, 미래에는 기초연금 방식을 고수할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 능을 강화할지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익률 개선은 노후소득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드러남.
- 흔히, DB 방식이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를 가진 근로자 대표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화이트칼라 정규직 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는 퇴직연금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예상 수익률 정도를 달성할 수 있으면 DC 방식이 오히려 더 높은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DC 방식 하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는 금융업권에서 보다 위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이미 많이 제시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방식이 과연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일 것이라는 데에 회의적임. 금융업권에서는 가입자들이 지나치게 위험회피적인 투자 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그러한 위험회피 투자가 낮은 수익률로 이어진다고 비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상황에서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

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급권보장장치나 최소수익보장과 같은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금융업권에서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별로 상관없거나 오히려 부담스러운 정책 대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업권이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 요구하는 위험투자 요건 변화는 오히려 위험한 대안일 수 있음.

- 그보다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집단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거나 디폴트옵션과 같이 (위험회피적 투자가 아닌) 위험중립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한국의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로부터 혜택을 받는 계층 정규직 화이 트칼라 -은 노후소득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DB 퇴직연금만 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연금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임.
- 본 연구를 통해서 퇴직연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1990년생의 경우 정규직 화이트칼라는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으로부터 더 많은 노후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은 부과소득상한이 있고 재분배 기능 때문에 국민연금액의 혜택은 다소 제한되는 반면, 퇴직연금은 부과소득도 없고 소득비례형 태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혜택이 집중됨. 특히 DB 방식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에서 퇴직 직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규직 화이트칼라에게 매우 유리함. 그러나, 이는 단지 DB 방식만의 문제는 아니고 DC 방식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한국의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의 영향은 근로연령 당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임.
-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사실 국민연금/퇴직연금에 대한 이른바 사각지대 문제를 논외로 하고 다룬 것으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임.
- 국민연금, 퇴직연금 정확히는 퇴직금제도를 포함한 퇴직급여제도 모두 사실 상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그렇 지 못함. 이른바 비정규직이나 불안정근로자들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제외되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상황임.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생애 근로기간이 30년 정도만 된다면 - 다시 말해서 가구의 주 생계부양 자라면 -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의 노후생활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그 런데, 생애의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어 10년 정도 비정규직으로 연금가입이 안되는

경우 노후소득 부족이 나타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음.

- 이 사각지대 문제는 국민연금 위주로 다루어졌지만, 실제로는 퇴직연금에도 존재하며 더 복잡함. 퇴직연금은 기업단위로 가입을 하여 행정비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실제로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행정비용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영세사업장을 꺼리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함. 퇴직연금이 임의제도인 경우는 이 문제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보편적인제도인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임.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음.

○ 다음 2가지 정도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째는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조기 퇴직 현상을 반영한 노후소득 시뮬레이션이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임. 사실 임금 이력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50대 초 중반에퇴직하는 경우 이들이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개연성이 높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무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연구의 보편성을 훼손하고 다른 집단들과의비교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배제하였음. 다만, (발표 자료에는적지 않았지만 조기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퇴직이 늦은 집단 4를 제외하고 실제 60세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이 7-11%P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노후소득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드러남.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연금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환경의 문제와도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연금정책에서도 핵심과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기는 하였음.

- 둘째,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보다 깊이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자영자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소득이력을 끄집어 내는 일은 사실 어렵다는 점에서 본연구에서 이들은 제외되었음. 물론, 이들은 퇴직연금 가입대상도 아니라는 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자 비중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는 연구가 필요함.

5. 퇴직연금 플랫폼 도입 방안

○ 이 장에서는 기업연금 강화 방안의 하나로서 퇴직연금 플랫폼 도입 방안을 개략 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각각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가운데 공적연금의 강화 방안은, 5년마다 국민연금법에 제시되어있는 재정추계를 통해 제도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음.
- 그에 반해, 사적연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의 경우 지금까지 주된 논의는 금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뿐, 퇴직연금 제도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논의되지 못하였음 (정창률 2014).
- 퇴직연금이 전체 노후소득보장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함.
-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장기적인 형태가 어떠한 것인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부재한 실정임. 작년 중장기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제도발전위원회가 진행되었음.
-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기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대 안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것 - 특히 국민연금 - 을 전제로 하 여 퇴직연금의 기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초연금의 경우는 어차피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퇴직연금 논의에서는 논외로 두더라 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임.
- 퇴직연금의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들이 중요할 수 있음. 가장 많이 언급되어 왔던 것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대한 것일 것임. 이 논의의 핵심은 현재 퇴직연금이 지나치게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낮게 수익률이 나와서 가입자들의 연금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점임 DB는 경우는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점임 그러면서,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험자산 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제시함.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DB의 경우) 기업 담당자나 (DC의 경우) 근로자들의무지 때문으로 몰아가서는 안됨. 그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은 문제가 더 핵심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금융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수익률 개선 만능주의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서는 곤란함.
- 그보다는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2층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

는데 더 필요할 것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가입방식을 개선하여 보편적인 2층 보장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퇴직연금 제도가 외형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정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가입의 어려움이 있는 계층들이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가 최저연금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음. 만일 국민연금이 최저연금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퇴직연금은 굳이 보편적인 적용이 될 필요가 없고,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방식이 유지된다면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인 제도로서 기능해야 할 것임.
- 현재 퇴직급여 퇴직연금 및 퇴직금 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및 퇴직금에 적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님.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해도 금융기관들이 관리운영비용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서 실제 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다시 말해서, 현재 퇴직연금 가입방식은 법적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발전 가입 방식임.
- 더 큰 문제는 자발적 가입 하에서는 금융기관들 퇴직연금 사업자 이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임. 기업연금 제도가 개인연금보다 많 은 국가에서 선호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규모의 경제로서, 기업단위의 관리가 개 인단위의 관리에 비해서 관리운영비용이 낮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 을 줄 수 있음. 그러한 특성은 반대로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관리운영비가 높을 수 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영세기업이 가입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은 그들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근 로복지공단에서 영세사업장이 적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복 지공단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가입은 미미한 상 황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막대한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주고 있는 상황 임.
- 그 결과,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률이 상용근로자 기준 50% 수준으로서 (통계청 2017),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 수준에 불과함. 가입이 가파르게 증가하였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증가

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임. 아무리 유인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해도 자발적인 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50% 이상 근로자를 포괄하는 경우는 없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가입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정창률 2018b). - 전체 노후소득보장 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퇴직연금의 가입방식이 자발적 방식이 아니라, 준강제 (quasi-mandatory) 방식이나 강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8월 정부가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발표하기도 했었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일종의 기업연금 플랫폼은 이미 스위스나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음. 이는 최근 논의되어 오던 기금형 퇴직연금에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논의되어 온 것이 퇴직연금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음 (정창률 2018c). 그러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 여기에서는 이를 간단하게 다루고자 함.

- 먼저,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고자 함.
- 영국은 대처 정부 이후 계속해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사적연금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여 왔음. 그 중 핵심은 이른바 적용제외 (contracting-out) 으로서, 보편적인 기초연금 위에 2층 연금의 경우 기업연금 (후에 적격 개인연금까지 포함) 과 공적소득비례연금을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1997년 신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지속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노후소득 문제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블레어정부는 2002년 연금위원회 (Pension Commission)을 발족하여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 Pension Commission 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관련)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2007 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법화되었지만 그 중 핵심은 이른바 자동등록 (automatic enrolment) 방식을 도입하여 2층 보장을 직장연금 (Workplace Pension) 전통적인 기업연금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연금(계정) 포함 으로 단일화한 것임. 자동등록 방식 도입 과정에서 공적소득비례연금을 기초연금에 통합하고, 모든 사업장은 직장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이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탈퇴 (opt-out)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과거 적용제외 하에서 영세사업장은 사적연금을 설치하기 어려워서 공적소득비례

연금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동등록 방식을 도입하면서는 이러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영국은 2012년 자동등록 방식을 도입하면서 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별도로 Workplace Pension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 근로자들을 이 기관을 통해서 2층 보장을 받도록 하였음. NEST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NEST가 전통적인 기업연금과 달리 개인계정 방식이라는 점임. 다시 말해서, 근로자들의 이직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통산에 유리한 개인계정 방식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는 개인연금 성격을 더했다고 볼 수 있음.

- NEST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른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것임. 사실 기업연금은 기금 등을 통해서 집합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여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취지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 계정 방식의 경우는 본인이투자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는매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자산 위주로만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노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이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중립적인 위험에 기초하여 투자하도록 하였음. 영국의 경우 이 NEST 방식에서 개인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지 않고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99% 이상에 이르고 있음.

○ 다음으로, 스위스의 사례를 언급하고자 함.

- 스위스는 체계적인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로서, 1984년에 이른바 3 충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면서 2층보장을 의무제도로 전환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그 1년 전인 1983년에 Substitute occupational pension institution을 설립하였음.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기금을 집합시켜 운영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회계처리는 개별 기업별로 이루어지며 사업장은 수익/위험 선호에 따라서 4개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근로복지공단 2015).8) 다만 포트폴리오의 결정 등을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며 개인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퇴직연금 제도가 2층보장 제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국과 스위스와 같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가입을 촉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⁸⁾ GEMINI 0, GEMINI 20, GEMINI 35, GEMINI 50 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의 숫자가 국내/해외 주식의 비중을 의미한다.

- 실제 설립은 매우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현재 근로복지공단 퇴직 연금을 대체하면서, 일종의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연금 제도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단을 참여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김복순. (2015).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노동리뷰. 43-59.
- 김진수, 정창률, 남재욱. (2015). 정년연장이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 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2). 87-111.
- 우해봉, 한정림. (2015).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국민연 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299-329.
- 장인성. (2013). 임금함수와 근속급의 비모수적 추정. 노동경제론집. 36(2). 37-65.
- 전수연. (2014).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추계. 예산정책연구. 3(1). 209-236.
- 정이환. (2013). 한국 고용체제론. 서울: 후마니타스.
- 정창률. (2012). 한국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국제비교: 가설적 위험 인구 집단 추정 방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4), 428-459.
- 정창률. (2014). 퇴직연금의 사회정책적 기능강화 방안연구: 소득보장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1(4). 165-194.
- 정창률 (2018a).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에 따른 향후 세대별 노후소득 수준. 제 930회 정책&지식 포럼. (10월 2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 정창률. (2018b). 퇴직연금 적용방식 개선 방안 연구: 노후소득보장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정책. 45(2). 123-149.
- 정창률. (2018c).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가입자의 관점에 서. 한국사회정책. 25(3). 151-174.
- 황수경. (2005). 연공임금을 다시 생각한다. 노동리뷰, 2월호.
- Grech, A, G. (2015). The social sustainability of pension of Europe. Scholars' Press.
- Meyer, T, Bridgen, P, and Riedmüller, B., (Eds). (2007). Private Pensions Versus Social Inclusion? Cheltenham: Edward Elgar.

<부록 1>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별 생애 임금이력 : 1970년생

(단위: 만 원)

연도	연령	집단1 (78.9)	집단2 (142.9)	집단3 (90.4)	집단4 (54.1)	집단5 (74.0)	집단6 (51.1)
1989	19	(10.0)	(1-12.0)	(50.4)	121.0	(1-2.0)	121.0
1990	20				125.4		125.4
1991	21				129.7		129.7
1992	22	176.0			134.1	165.6	134.1
1993	23	180.6			138.4	171.6	138.4
1994	24	185.2		147.8	142.8	177.5	142.8
1995	25	189.8		155.8	145.4	183.5	145.4
1996	26	194.3	226.5	163.8	110.1	189.4	110.1
1997	27	198.9	240.6	171.7		195.4	
1998	28	203.1	254.6	179.7		199.1	
1999	29	207.4	268.7	187.7		202.7	
2000	30	211.6	282.7	196.0		206.3	
2001	31	215.8	296.8	204.3	148.1	210.0	148.1
2002	32	220.0	310.8	212.5	150.8	213.6	150.8
2003	33	224.3	324.8	220.8	153.4	210.0	153.4
2004	34	228.5	338.9	229.1	156.1		156.1
2005	35	232.7	352.9	237.4	158.8		158.8
2006	36	236.9	367.0	245.6	161.4		161.4
2007	37	241.2	381.0	253.9	101.1		101.1
2008	38	244.3	395.1	262.2		217.3	
2009	39	247.5	409.1	270.5		220.9	
2010	40	250.7	423.2	278.8	164.1	224.6	164.1
2011	41	253.8	437.2	287.0	166.7	228.2	166.7
2012	42	257.0	450.8	295.3	169.4	231.8	169.4
2013	43	258.8	464.4	303.6	172.1	235.5	172.1
2014	44	260.5	478.0	311.9	174.7	239.1	174.7
2015	45	262.3	491.6	320.4	177.4	242.8	177.4
2016	46	264.0	505.2	329.0		246.4	
2017	47	265.8	519.2	337.5	180.0	250.1	180.0
2018	48	267.6	533.2	346.1	182.7		
2019	49	269.3	547.3	354.7	183.0		
2020	50	271.1	561.3	363.6	183.2		
2021	51	272.8	575.4	372.5	183.4	250.4	
2022	52	274.6	589.0	381.3	183.7	250.7	
2023	53	276.4	602.6	390.2		251.0	
2024	54	278.1	616.2	399.1		251.4	
2025	55	_: ••-	629.7			251.7	
2026	56					246.7	
2027	57					241.8	
2028	58					236.8	
2029	59				183.9	231.8	
2030	60				180.3	226.9	181.7
2031	61				176.7		
2032	62				173.0		
2033	63				169.4		
2034	64				165.8		

주: 2017년 물가 기준